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9095(2023. 10. 24.)
2. 10월 24일(화)부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을 "등(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으로 개정 한 법률안을 공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절차없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각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률제197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자 청(초등)1-11, 직속전체(1-29), 유전체(1-757), 초전체[특수포함, ~~일반체외~~](1-632), 안전총괄담당관,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감학사	손용준	체육·청소년·수련담당장학관	김종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전결 2023. 10. 30. 김진효
------	-----	----------------	-----	------------	----------------------

형조자

시행 체육건강예술교육과-6919 (2023. 10. 30.) 접수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윤로2가) / http://
 전화 02-3999-087 /전송 /savmaster@sen.go.kr /공개